

축사시설 의무소독에 대한 협의회 개최

— 축사소독은 특수성에 맞게 별도관리해야 —

南斗熙
(월간양계 편집과장)

최근 각 양계장에 소독 명령서가 발부되는 등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한 축사시설 의무소독 제도 실시에 따라 양축농가의 동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본회는 대한양돈협회, 낙농육우 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8일(목) 오후 3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사시설에 대한 의무소독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사부·농수산부 관계관과 생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의에 의한 효율적인 법시행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축사시설 의무소독은 전염병 예방법 개정(83. 12. 20공포)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84. 6. 30공포), 시행규칙 제정(84. 9. 3)에 의해 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는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모법에 따라 100평 이상의 축사사육시설에 대해 2개월에

1회이상 허가를 받은 소독대행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실수요자 부담으로 소독을 실시케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축농가에서는 가축방역상 자발적으로 법에 정한 기간보다 더 빈번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이 되며, 외부인(소독대행업자) 출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생산성저하 우려, 소독대행인의 가축전염병 매개 우려, 가축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 현행제도상 가축보상제도미비 등 법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축사의 무소독을 제외하거나 자체농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염병 예방법 중 축사시설 의무소독에 대하여 축사소독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기자는 본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업계별로 발췌 편집하여 게재한다. 이날 각 업계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기춘(보사부 방역과)
- 김영무(농수산부 가축위생과)
- 강희구(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 노광순(운암농장 대표)
- 오재정(동진회 총무)
- 황인옥(분회 전무)
- 김남용(낙농육우협회 전무)
- 김상호(낙농업)
- 김학재(서울우유, 수의사)
- 전병찬(제일종축, 수의사)
- 사 회 : 한백용(양돈협회 전무)

법은 만민에게 평등, 다소 부담되나 국민보건 위해 협조요망

(보 사 부)

전염병 예방법은 당초 81~82년에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수익자 부담이 크고 수용태세

미흡으로 83년 12월 20일에 모법을 개정·공포하였고 이후 84년 6월 30일에 시행령을, 9월 3일에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모법 제40조에 보면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독의 대상설정은 보사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시행령 제11조 2항에 100평 이상의 사육시설을 포함시켜 2개월에 1회 이상 의무소독을 하도록 했다.

또 소독은 임의가 아닌 허가 받은 소독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고,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소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축가들은 다소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국민보건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법 40조 2항은 보사부에서 시행중인 연막·분무소독을 관(官)이 지정한 대행자에게 이관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능한 관의 규제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축산실정에 비추어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여야 하므로 축산업자 뿐만 아니라 항공기, 여관, 식당, 공연장, 병원 등도 소독범위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점차로 하한선을 내려 실시할 예정이다.

축사를 300㎡ 이상으로 상한

선을 둔 것은 법의 정착과 소독의 효율성을 위해 큰 곳에서 점차 작은 규모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키 위함이다.

법 운영상 묘를 살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 시행 1년도 안되어 법 폐기는 어렵다고 본다.

약제선정도 법에 의한 품목허가 제품에 한해 사용토록 되어 있어 동물용 소독약을 못쓰게 되어 있다. 축사의 경우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범위에서도 법을 살리며 효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축사소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관장하는 방법으로 유도

(농수산부)

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이 보사부로부터 농수산부에 합의차 왔을 때 법의 내용에 이견이 없었다. 동법 40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소독 대행업자로 하여금 필요할 때 소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농수산부측에서는 농장이 자체적인 정기소독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필요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문제는 보사부측에서는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여 의무소독을 실시케 되었다.

이에 농수산부는 양축가의 경제적 부담가중, 질병전염, 스트레스 가중, 증체율 감소, 닭의 산란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는만큼 「필요한 때」의 해석상의 문제를 시정하여 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한 바 보사부에서

는 축사주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대답을 해왔다. 이는 농수산부의 견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축사주변도 축사내부와 같이 양축농가에서 소독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야하며 2개월에 1회 소독으로 농장소독은 효율이 없다고 보아, 소독횟수를 늘려야만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 축사소독은 농수산부가 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책임지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양계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민감해 문제점 발생시 사회문제화 우려

(양계업계)

대부분이 영세농가인 양계업의 경우는 1만수 이하 62%, 3만수 이하 전업 32%로 94%가 생업을 위한 양계업으로 양계장과 계사가 한 곳에 또는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어 법에서 규제하기 전에 스스로 하루에도 몇차례씩 소독을 실시한다.

6만수 사육농가의 경우 24동 계사를 매일 소독하기 위하여 대·소형 소독용 분무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독약값으로 월 3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양계장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닭은 예민하여 낯선사람이 계사에 들어가 놀라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1%의 산란율이 감소한다. 회복까지 2주 정도 걸리니 총 14



△ 본회의와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개최된 축사시설 의무소독 협의회

~15%의 막대한 손해가 된다. 사료차 진입시도 꼭 소독하고, 여름철은 인근주민을 위해 더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주인이 양계장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전문 관리인만 출입하는 실정이다.

법 입안자가 농장의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고 본다. 양계인 입장에서 법자체의 모순이 심하다고 본다. 재조사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기 바란다.

현재 지방 양계장에 소독명령서가 발부되어 일부 소독업자는 엄포를 놓고 농민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 동요하고 있다. 혹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게되면 닭의 가축보상제도가 정립돼 있지 않은 현실 점에서 사회문제화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축사소독에 대하여 반드시 배제조항이 필요하다.

양계인들 스스로 경영합리화

를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과잉보호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소독업자 뒤를 재소독하는 모순, 농장 자체적으로 소독해야

(양돈업계)

축산물수요의 급증으로 전업 규모의 양축가가 많이 늘었으나, 아직 영세성을 탈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무소독 해당 양축가(100평 이상 축사 소유)는 낙농·육우 2천5백가구, 양돈 1만가구, 양계 4천5백가구 등 1만7천 가구에 이른다.

최근 축산업자들의 장기간 불황으로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가축은 없이 축사만 있는 경우도 의무소독 고지서가 나왔다. 또 축사주위소독은 주위라는 한계에 소독업자와 양축가의 견해차이가 크며,

1차산업을 2, 3차 산업과 같은 비중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잘 안되는 경우 순박한 농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게 된다.

기업양돈의 J종돈장은 방역비를 월 5백만원 지출하며 그 중 30%(약 150만원)가 소독비에 대한 지출이다. 소독장비도 돈사 2동당 1대 꼴로 보유하고 개인우의는 물론 방독면까지 비치하고 있으며 사장도 수의사의 통제를 받아 돈사를 출입한다. 의무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업자 뒷자리를 따라 다니며 소독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SPF 농장의 경우는 사료도 외부에서 받아 완전 펠렛팅하여 멸균해 급여하며 출입을 위해서 사위를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가 별도로 준비된 옷을 착용하고 수의사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며 타 축사 종업원이라도 다른 축사를 방문하려면 3

일 동안 농장 밖에서 대기한 후 들어보낸다.

의무소독으로 인한 추가방역비는 생산원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불가상승의 요인이 되는 만큼 축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독약값, 출장여비, 인건비등 불필요한 경비부담 가중

(낙농·육우업계)

법 개정시 융통성 있게 제정되었으나 각 업계의 건의사항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본다. 운영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농사짓는 농민들은 소출을 더욱 많이 얻기 위해 년중 강한 햇빛아래 수차례 농약을 치는 등 스스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이 양축가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예방차원에서 소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특수 소독기구를 개발해 축사소독 비용을 절감해 준다면 모르나 업자선정하여 소독비에 여비, 인건비를 더 들여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는 감이 든다.

낙농업의 경우 대개 주민들과 격리된 산간 또는 오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축주가 할 수 없는 것만 남에게 의존한다. 예로 소가 병나면 10중 1~2 마

리에 한해 전문 수의사를 부른다. 이렇게 생산비절감에 노력하고 있는데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골 오지에 편중돼 있는 축산 농가방문으로 출장여비, 인건비 등 약값보다 부대비용을 더 부담할 이유가 없다.

대행업자는 시(市) 등 대도시에 있고 양축농가는 시골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모순점이 많다고 본다. 물론 전문 소독자로서 효용성은 높을지도 모르나 전문적인 사항은 농촌 지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의와 상반된 의무소독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유보되어야만 한다.

제 14 회 육용계 능력검정 출품신청 요령

85년도 제 1 차(통산 제 14 회) 육용계 능력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검정장소 및 수수 : 본회 검정소(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소재), 2,000수
- (2) 검정기간 : 85. 6. 1~7. 26(8주간)
- (3) 출품신청 : 85. 4. 15(월)~4월 30일(화)
- (4) 종란수집 : 5월 7일~8일(2일간) 지명된 검정위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2,000개 이상의 동일계통 종란중 임의 추출하므로 출품농장에서는 소요종란을 확보하여 종란수집일까지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5) 출 품 료 : 품종(군)당 100,000 원
- (6) 기 타 : 출품료는 출품신청시 본회에 납부해야 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본회 사무국 육용계 능력검정 담당자에게 (전화 752-3571~2) 문의하면 된다.